

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(제65조제1항 관련)

1.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(진폐는 제외한다)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가. 제1급

- 1) 두 눈이 실명된 사람
- 2)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
- 3)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
- 4)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
- 5)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
- 6)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
- 7)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
- 8)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

나. 제2급

- 1)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.02 이하로 된 사람
- 2) 두 눈의 시력이 0.02 이하로 된 사람
- 3)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
- 4)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
- 5)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
- 6)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

다. 제3급

- 1)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.06 이하로 된 사람
- 2)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
- 3)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어 전혀

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

- 4)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
- 5)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
- 6) 위의 3)과 4)에 정한 장애 외의 장애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

2. 삭제 <2010.11.15>